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10/19 통권 1593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이름**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는 경청한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거래신고와 각종 소득의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누락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소급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무상 처리방법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국무회의의 의결
- 회계신뢰는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타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이사결과와 稅計經營戰略

〈월급생활자를 위한세제개편안: 2023년 1월부터 적용 예정안〉

제목	현행	개정	의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낮은세율 적용금액 구간 인상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 이하	월 20만원 이하	식비인상 현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400만원	임차료 상승 현실 반영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수업료 · 교재비 · 입학금 등	대학입학전형료 · 수능응시로 추가	모든 교육비용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도서공연 등 30%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추가	문화 지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액의 10% 또는 12%	월세액의 12% 또는 15%	실제지출 월세
고액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만~5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50만~20만원	고액연봉자 세액공 제 축소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2년 10월 19일(수) · 주간제 42호 · 통권 제 1593호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안내
구독료 30000원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93호 / 주간 42호

2022. 10. 19.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일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월급생활자를 위한 세제개편안 : 2023년 1월부터 적용 예정안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거래신고와 각종 소득의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2
C E O 에 세 이	CEO는 경청한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국내매입 자산의 해외 자매회사 재 판매에 따른 기 공제받은 매입부가세의 세무문제 - IPP 연계 인턴 사원 실습비 지급 계정 문의 - 직 수출 매출처리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수정 -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등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누락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소급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무상 처리방법	7
매 일 절 세 제 무 요 점	- 2022년 정부의 법인세율구조 개편안 - 세금포인트 사용 혜택	9 10
직 장 인 Survival	독서 속도를 높이는 7가지 방법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판단 시 통산하지 아니함 (사전법규재산-96, 2022.04.11) - 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사전법규재산-1865, 2022.03.23)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 방역조치재난피해 17만명 직권제외	14
마 케 팅 Tax consulting	타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12
세 무 정 보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15 24
회 계 정 보	- 회계신뢰는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8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거래신고와 각종 소득의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제출서류 종류	해당소득, 거래 등	제출기한	관련규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장려금 등)	매월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매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	소득세법 제164조의3
	근로소득(6개월 단위)	6개월 반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7월말, 1월말)	
지급명세서 제출 (연소득 정산 목적)	연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지급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소득세법 제164조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종교인 소득, 봉사료소득 등(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	
	금융투자소득(6개월 단위 원천징수기간)	매년 반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7월말, 1월말)	
부가세 신고	부가세 과세 매출액, 매입액(세금계산서)	매 3개월 단위 다음달 25일	부가세법 제48조, 제49조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세 면세 매출액 등(계산서)	1년 단위 수입금액, 다음연도 2월 10일	소득세법 제78조
법인세, 종소세	법인 이익, 개인 종합소득(1년 단위)	다음연도 3월 말(법인) 다음연도 5월 말(개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동산 양도신고	부동산과 주식양도 예정 신고와 확정신고의무	부동산 양도월의 다음 달 2달 말일 신고 1년 단위 합산 5월말 신고	소득세법 제105조
증권거래세 신고	상장주식(매월)이나 비상장주식 양도	반기 6개월 단위 다음 달 2개월내(8월말, 2월말)	증권거래세법

CEO는 경청한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비방지목(誹訪之木). 헐뜯는 나무라는 뜻으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 올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 고대 요순시대(堯舜時代)는 덕으로 천하를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역사의 귀감으로 칭송되는 시대다. 요 임금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모로 훌륭한 청년인 순을 후계자로 정했다. 순은 어리석은 부모에게도 헌신하고 효를 다하며 우애로 아우를 잘 다스려 가족을 화목하게 이끌었다. 그러면서도 나라 일도 슬기롭게 잘 처리하는 믿음직한 젊은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요 임금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풀고 지혜로운 후계자를 두어 성인으로 추앙을 받았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늘 자기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궁리 끝에 꺾문 앞에 큰북을 매달았고 대궐 안쪽에는 나무 네 개를 엮은 기둥을 세웠다. 북은 백성으로서 임금에게 쓴 소리를 하고 싶으면 서슴없이 쳐서 알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둥은 임금의 정치가 불만스러울 경우 적으라는 뜻이었다. 그 북을 ‘감간지고(敢諫之鼓)’라 했고 기둥을 ‘비방지목’이라 했다.

비판은 쓰고 아침은 달다

오래 전에 사회의 원로로부터 들은 웃지 못할 이야기다. 정국이 어지러울 때였다. 그래서 그분은 국가 최고 경영자가 각계원로로부터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초청받았다. 그런데 식사한끼 얻어먹고 실컷 국가 최고경영자에게서 훈시 비슷한 홍보성 변설만 듣고 왔다. 고심해서 준비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다시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며 노여워했다.

고소를 금치 못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CEO는 경청해야 한다. 비판의 소리는 쓰고 아침의 소

리는 달다. 하지만 쓴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설사 비방일지라도 새겨듣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 하다.

첫째, 고객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고객의 니즈(needs)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가 기업의 사 활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주와 채권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주주와 채권자는 기업에 화폐자원을 공급하는 귀중한 존재다. 그들로부터 외면당하면 만사 끝장이다.

셋째, 종업원과 협력회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회사는 갈등 에 휩싸이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판매할 수 없다.

소리없는 다수의 소리를 들어야

넷째, 사회와 국가의 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기업은 사회 속에 존재한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면 안된다. 건전하고 또 공정하게 경영을 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요청인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야 한다.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리없 는 다수(Silent Majority)’의 소리를 지혜롭게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쁜 CEO는 제한된 시간을 배분할 줄 아는 술기가 필요하다.

사람과 인터넷 정보와 독서가 그것이다. 시간의 3분의 1쯤은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그것도 계층과 성향이 각기 다른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 3분의 1쯤은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와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접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쯤은 독서를 통해 넓 고도 장기적 안목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귀가 얇기 때문에 상대하기 곤란하다는 치명적 약점도 치유될 수 있다. 묵직한 주관을 마음 속에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귀가 얇은 CEO에게는 값진 정 보가 모이지 않는다.

국내매입 자산의 해외 자매회사 재 판매에 따른 기 공제받은 매입부가세의 세무문제

Q 회사 생산사용 목적으로 삼성에서 장비입찰을 통해 낙찰 받고 현재 건설중인자산으로 기록된 자산이 있습니다.
이후, 해외 자매회사로 이전 결정이 내려졌고, 그간의 모든 비용 및 장비 가격을 해외 자매 회사로부터 청구 받기로 했습니다.
장비입찰 시, 국내 Bidding 업체를 통해 , 장비가격+ 낙찰성공에 따른 수수료 등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었는데,
결과적으로 단순 구매대행 형태로 비취질 수 있을 거 같아서, 기 공제 받은 매입부가세에 대해 세무적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지요?

A 국내매입자산을 해외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귀사가 해외 자매회사의 단순 구매대행인지의 여부 및 기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과세회피 여부 등의 세무상 쟁점여부는 과세당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IPP 연계 인턴 사원 실습비 지급 계정 문의

Q IPP 연계로 고용한 인턴 사원에게 실습지원금을 회사에서 선지급하고 실습이 종료되는 시점에 학교로부터 실습지원금 금액을 payback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습비를 급여 계정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는지,
급여 계정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실습지원금의 최종 부담자는 귀사가 아니고 학교이므로 선지급시 귀사의 비용(급여)로 처리하면 안되며, 가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 payback 시점에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직 수출 매출처리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수정

☞ 당사가 2021년 6월에 선적 완료한(신고필증 보유) 매출 건에 대해서 매출처리를 누락하여

Q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매출 건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8월에 누락된 매출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년 8월에 누락된 매출을 반영하고, 누락된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2021년 8월 조기환급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가산세항목과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2. 2021년 8월 조기환급 신고시 누락된 매출신고가 불가능하다면, 2021년 1기 확정신고를 수정신고 해야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여부? 2021년 1기 확정신고를 수정할 경우 가산세항목과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3. 직 수출 매출누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가산세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6월에 선적이 완료된 수출에 대해서는 1기 확정신고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8월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안되고 1기 확정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등

Q 미국 본사가 미국 회계법인(딜로이트)와 회계용역 계약을 맺고, 미국 딜로이트가 한국내 딜로이트에게 미국 본사의 한국내 자회사의 회계감사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여, 한국내 자회사는 한국 딜로이트에게 회계감사용역을 제공받음.

한국자회사는 한국내 딜로이트에서 감사용역을 제공받고 감사용역 비용은 미국 본사에 지급하고 미국 본사는 미국 딜로이트에 지급합니다.

이러면 한국 자회사가 한국내 딜로이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나요?

부가세 측면에서 상기건에 대한 tax issue(원천세 및 국제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 본사와 미국 회계법인간 계약 체결하고 해당 계약대로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로, 귀사(한국 자회사)는 계약 주체가 아니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주체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미국 본사에 대금 지급시 인보이스 등을 수취보관하시면 됩니다.

누락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소급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무상 처리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부가가치세 신고시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처리방법은 각각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 신고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누락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되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반드시 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반영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경정청구서에 의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만 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차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명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부가46015-3304, 2000.09.23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항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소급하여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내 작성분만 매입세액공제 적용됨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와는 달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원천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때에도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된다.

◇ 공급시기 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

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나, 가산세 있음
과세기간 후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2022년 정부의 법인세율구조 개편안

과세표준	현행 세율	개편안	
		중소·중견	이외 일반법인
2억원 이하	10%	10%	20%
2억~5억원	20%		
5억~200억원		20%	22%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22%	22%

화

연금상품 가입 시 연말정산(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

(단위 : 조/원)

	전체 세액 ('21년 신고기준, A)	세수효과(B)	경감률 (B/A)
대기업	40.5	△2.3	5.7
중소·중견기업	19.7	△1.9	9.6
전체	60.2	△4.2	7.0



세금포인트 사용 혜택

사용 혜택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개인 · 법인)
-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개인 · 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수강(개인)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 사무 · 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

-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 유예(개인 · 법인)
- 1천만원 이하 소액채납자 압류재산 매각유예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개인)
- 기획 · 특별전시 관람료 10% 할인 제공

- 국립세종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개인)
- 국립수목원 입장료 20%(1천원) 할인 제공



고금리 단기에 · 적금

은행	상품명	예치기간	금리
케이뱅크	코드K정기예금	6개월	4.10
우리은행	원플러스 예금	6개월	4.14
대구은행	창립55주년 특판정기 예금	6개월	4.0
수협은행	헤이 정기예금	6개월	4.2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3.7~3.8
신한은행	솔편한 정기예금	6개월	2.25~4.0



독서 속도를 높이는 7가지 방법

1. 스캔하는 방식을 배우세요.

빨리 읽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은 스캔입니다. 문장들 속의 정보를 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캔을 어려워합니다. 읽기를 배울 때 문장의 모든 단어에 주의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 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2. 각 문단의 처음과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 됩니다.

먼저 각 문단을 소개하는 주제 문장으로 시작하고, 이후에는 문단이 어떻게 쓰일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줍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주제를 일일이 모두 읽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3. 머리 속에 있는 목소리를 끄세요.

읽기를 배울 때 갖게 되는 또 다른 습관은 글자를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문제는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단어를 말하는 것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블록의 단어를 통째로 읽는 겁니다.

4. 포인터를 사용하세요.

읽을 때 우리는 종종 같은 문장을 다시 반복해서 읽곤 합니다. 이는 제대로 집중을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때문에 읽기의 흐름을 놓치게 되죠. 펜 등을 포인터로 사용하면서 다시 같은 문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읽을 동안 다른 건 하지 마세요.

귀가 심심하다는 이유로 음악이나 라디오를 켜놓은 채 책을 읽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최악의 읽기 습관이 바로 독서를 하면서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등 다른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줄여야 합니다.

6. “부드러운 눈”을 이용하세요.

정신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효율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각각의 단어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눈은 다섯 단어 길이 정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한 개의 단어에 집중하면 비효율적입니다. 읽을 때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고 눈에 힘을 빼면 더 많은 단어도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7. 읽기 전에 글에 대해 미리 자문해 보세요.

이 기술은 읽기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속독에도 유용합니다. 글을 읽기 전에 일련의 질문을 만들어서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빨리 읽는 방법입니다. 미리 자문을 하면 정보를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쉽고 빠르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타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1037, 2022.03.30

■ 질 의

- (질의1) 다른 기업이 연구개발한 신성장 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당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에 따른 시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같은 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판단 시 통산하지 아니함

사전법규재산-96, 2022.04.11

■ 질 의

- 1) 부친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고 있는 농지를 질의자가 증여받아 계속해서 위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질의자의 위탁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위 사실관계에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질의자가 소유하는 기간동안 해당 농지를 질의자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이하 "해당조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사전법령재산-869, 2021.12.31

■ 질 의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신규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 회 신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 외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사전법규재산-1865, 2022.03.23

■ 질 의

- 질의자는 (주)○○○○○○○○(이하 “법인”)의 주주이자, 사용인으로 자녀에게 법인 주식 50,000주를 증여함

질의

- 질의자가 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시가 평가시,
- 질의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30% 출자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의 사용인의 출자비율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 방역조치재난피해 17만명 직권제외

법인사업자 58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되며, 예정고지를 안내 받은 개인사업자 186만명과 중소기업 15만명은 고지서에 안내된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면 된다.

올해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별도 고지를 하지 않는다.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명, 태풍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3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그 밖에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3개월 내 납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조기환급금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상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은 법정지급기한보다 열흘 가량 빠른 10월 31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1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법인사업자 20만명에 제공한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최근 신고사항을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의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휴택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 내역 조회 화면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형식을 통일해 납세자가 자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 및 부당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스톡옵션 비교세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벤처투자시장에서 민간부문이 더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비교세 한도 확대, 실리컨밸리식 금융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벤처투자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벤처기업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열린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투자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벤처투자 생태계는 외적 성장에도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와 낮은 민간지원 활용도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전문 인력이 벤처투자시장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태펀드 신규 출자 및 회수 재원 활용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되 벤처투자 창업, 성장, 회수 단계에서 민간 자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전했다.

벤처투자는 위험이 크고, 대가도 높은 위험투자다. 그간 정부는 일부 손실부담을 감안하고 벤처 육성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세금지원으로 물러나고 민간 스스로가 위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이런 방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등과 세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사, 벤처캐피탈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국세청, 2021. 9. 0

- (개요) 법인사업자 58만 명은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합니다.
 - ①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 명), ②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 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3년 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옥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또한,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서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 대상: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22년 10월 확대] 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 ('21년 2기 예정) 59종, 18.5만 명 → ('22년 2기 예정) 61종, 20만 명 (8%↑)

1 '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



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8만 명으로, '21년 2기 예정신고(56만 명) 보다 약 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186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 총 201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2. 1. 1. ~ '22. 6. 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체 고지대상자 218만 명 중 세정지원 대상 17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 50만 원 미만 ('22년 1월, 부가법\$48③)

- (전자신고)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 ~ 10. 25.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1.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 (예정고지 제외) ①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¹⁾(14만 명)와 ②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²⁾ 소재 사업자(3만 명)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총 17만 명)

1) '22. 6. 29. 시행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수보)

2)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2년 7월~12월 실적을 '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 (조회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10. 25. / 10. 31. / 11. 30. / 12. 31. 중 택1)

2.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실시

- (납부기한 연장)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홈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3.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신고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8.31.)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000억 원 이하에서 1,500억 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22년 10월 확대]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 기업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 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⑨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2. 10. 31.(월)

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 11. 9. 보다 9일 앞당겨 지급

3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20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 * ('21년 2기 예정) 59종, 18.5만 명 → ('22년 2기 예정) 61종, 20만 명 (8%↑)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 PC방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입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인 > 수입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4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임대업 신고 개편)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모바일 손택스 화면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자료 조회 개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 내역 조회 화면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형식을 통일하여 납세자가 자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없도록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은 모두 공제대상 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순으로 자료가 조회됩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부당환급 주요 적발 사례 |

- 상가 매입 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상가 매입분에 대해 전액 환급받았으나, 동 상가에서 자기의 학원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어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
-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 건설 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 없이 건설 자재를 납품한 거래는 국내 거래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추징

-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 1. ~ 6. 30.	예정신고	1. 1. ~ 3. 31.	4. 1. ~ 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 1. ~ 6. 30.	7. 1. ~ 7. 25.	법인사업자
		1. 1. ~ 6. 30.	7. 1. ~ 7. 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 1. ~ 12. 31.	예정신고	7. 1. ~ 9. 30.	10. 1. ~ 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법인사업자
		7.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 1. ~ 12. 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 1. ~ 1. 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 1. ~ 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 1. ~ 6. 30. 기간의 실적을 7. 25. 까지 신고·납부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모든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0. 1. ~ 10. 25. 매일 06:00~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고 (스마트 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시간: 2022. 10. 25. (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분	주요 내용
홈택스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참고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 (총 29종)	제공일정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2. 10. 13.
2		신용카드 매출	22. 10. 13.
3		판매·결제대행자료	22. 10. 17.
4		현금영수증 매출	22. 10. 01.

5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2. 10. 15.
6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2. 10. 11.
7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2. 10. 13.
8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2. 10. 14.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2. 10. 13.
10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22. 10. 01.
11		현금영수증 매입	22. 10. 01.
1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2. 10. 14.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2. 10. 01.
14		재고납부세액	-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2. 10. 0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 ,	-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20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2. 10. 15.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2. 10. 14.
22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2. 10. 11.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4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5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 10. 13.
26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 10. 13.
27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2. 10. 15.
28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수취, 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2. 10. 15.
29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참고 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수입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수입사업자 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 2021. 9. 0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 *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뒤,
- 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2~8.24일) 및 입법예고(8.12~9.1일)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8.12~10.5일), 차관회의(10.6일), 국무회의(10.11일)를 거쳐 확정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 8월 12일 입법예고 하였던 개정안 중 이번 확정 정부안에 그대로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 지원)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한편,
 - 종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져 왔으나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 ※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등 감안,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 시설로 구분하여 감면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재설계 내용 포함
 - (친환경·신기술 지원)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 (균형발전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등)

- (납세자 부담경감)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 (납세자 편의 제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 확정신고(5월) 납부기한 : (종전) 5월내 납부 → (변경) 7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 확정된 정부안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당초안에 추가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하였다.
-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참고

'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특례법)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 (현행) 약 0.3만개소('21년 기준) → (확대) 약 1.1만개소

구 분	현 행(감면율)	개 정(감면율)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 연장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은 무료·유료 여부 등에 따라 감면 재설계

사회복지시설(무료)	신 설	취득세 · 재산세 50% (조례 50%p 추가 可) 등록면허세 · 주민세 100%
사회복지시설(유료)	신 설	취득세 · 재산세 25% (조례 50%p 추가 可) 등록면허세 · 주민세 100%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40만원 한도) 일몰기한 연장 (2년)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100% (40만원 限)	감면 연장 (2년)

□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특례법)

신 설

-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 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세 특례 신설
-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등)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율)
인구감소 지역	창업 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100% (5년*) * 이후 3년간 50%
	사업장 신설 · 이전	취득세 100% 재산세 100% (5년*) * 이후 3년간 50%
	사업전환 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 (현행)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에 가산세 추가 부담**
 - *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
 - ** 중과세율(8%)을 적용한 총세액에서 既 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를 모두 합한 세액
- (개선)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 절차 마련
 -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고려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부과

구분	현행	개정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종전주택 미처분 ※ 중과세율 적용(8%)	별도 신고 절차 없음	처분기간 경과후 60일 이내 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없음
	납부지연가산세	없음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지방세법)

-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

구분	현행	개정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분납기간	<신 설> 종합·퇴직소득분 세액이 1백만원(국세 10%) 초과시 ※ 분납금액 시행령 위임 2개월 이내

※ 양도소득분과 법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국세 대비 각각 +2개월,
+1개월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납부이연 효과가 발생하므로 분납규정 미운영

회계신뢰는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 금융위원회, 2021. 9.0

I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제도는 상장대기업(외감대상 33,250개 중 496개, 1.5%)에 적합하게 설계
 - 중소기업에게는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서 각종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준수하는 사례가 많고 규제 집행도 쉽지 않은 측면

- 그동안 정부는 새로운 회계제도의 기업규모별 순차 도입*, 공시부담 완화**등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 * 예) 내부회계 외부감사는 대형 상장사(자산 2조 이상, '19년 도입)에 비해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 '23년 도입)에게 4년 늦게 시행
 - ** 소규모 상장사(자산1천억원 미만 또는 매출 5백억원 미만)의 공시항목 축소('21년)

- 그러나, 중소기업에게 대형 상장사와 동일한 회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적고, 일상적인 거래가 대부분인 중소기업에 대기업에 적합한 회계규제의 일률적 적용 필요성은 크지 않음
 - * 예) 거래구조가 단순한 회사는 '거래의 결과'인 증빙검토 등을 통해 효과적인 회계오류 방지가 가능하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거래의 시스템) 외부감사 도입 실효성 낮음
 - 최근 회계개혁으로 인한 회계비용 상승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

➔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되,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방안도 마련

II 중소기업 회계환경 및 평가

1. 총괄

- (외감대상 현황) '21년말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총 33,250개사
 - 전체 외감기업 중 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4%(30,071개)로 매우 높은 수준

〈자산규모별 외부감사 대상기업 분류(상장/비상장)〉

구분	100억 미만	100억 ~200억	200억 ~500억	500억 ~1천억	1천억 ~5천억	5천억 ~2조	2조 이상	총계*
상장기업	79	83	235	528	1,036	305	191	2,457
비상장기업	3,227	8,322	10,969	4,434	3,119	534	188	30,793
사업보고서 제출	45	43	88	62	85	51	102	476
사업보고서 미제출	3,182	8,279	10,881	4,372	3,034	483	86	30,317
총계 (비율%)	3,306 (9.94)	8,405 (25.3)	11,204 (33.7)	4,962 (14.9)	4,155 (12.5)	839 (2.5)	379 (1.1)	33,2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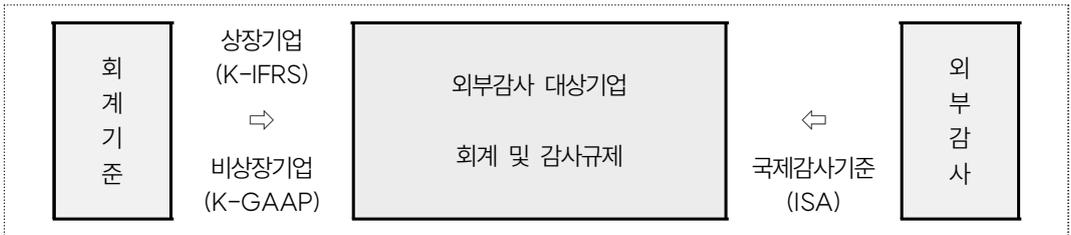
- 전체 상장기업(2,281개, 코넥스 제외) 중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 비중은 33.6%(768개)로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기업

〈상장기업 중 소규모 기업 비중(22.7월 기준)〉

구분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전체 상장사 수	1,490	791
자산 1천억 미만	706 (47.3%)	62 (7.8%)
중소기업*	956 (64.1%)	88 (11.1%)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 & 매출액 400~1,500억원(금융업 400억 등)]

2. 회계제도 현황



① (회계기준) 상장회사(예정회사 포함) 및 금융회사는 K-IFRS 의무적용*, 비상장회사는 일반



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 모회사가 K-IFRS 적용 시 자회사가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K-IFRS 적용하고, 일반비상장회사는 선택적으로 K-IFRS 적용가능

** '21.7월 기준 32,897개사 중 K-IFRS 5,694사(17.3%), K-GAAP 27,203사(82.7%) 적용 中

② (회계·감사규제)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기업규모와 이해관계자 수에 따라 각각 상이한 회계 관련 규제가 적용

○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상장회사는 재무제표의 충실성과 외부감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며,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도 상장회사에 준하여 규율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주기적 지정제 적용,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등

〈상장-대형비상장-비상장회사 간 회계규율 비교〉

구분		상장회사	자산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기타 비상장회사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구축·운영 의무	○		X
	외부감사인인증 수준	감사	검토 ('감사'보다 낮은 강도)	X
주기적 지정제		○		X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상장사 감사인 등록법인 한정)	회계법인	회계법인, 감사반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		연속 3개년까지 감사 가능		연속 5개년까지 감사 가능
3년 연속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		○		X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감사위원회가 없는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		X

③ (감사기준*) 외부감사인은 기업규모, 상장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감사대상기업에 대해 국제 감사기준(ISA*)을 적용하여 외부감사 실시

* 세계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개정 → 한국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12년부터 국제감사기준(ISA : International Standard on Auditing)을 전면 도입하여 '회계감사기준'으로 사용 中

3. 평 가 : 중소기업의 어려움

- ① (회계기준) K-IFRS는 소규모 상장기업의 준수 부담이 큰 측면
 - IFRS는 '원칙중심 회계'로 회계처리 시 판단의 여지가 많고, 요구하는 공시 수준이 높아 전문가 수준의 회계역량을 요구하나,
 - 소규모 기업은 비용 측면에서 전문적인 회계인력 운용 애로

- ② (회계·감사규제) 대형 상장사에 맞추어 설계된 회계·감사 관련 각종 제도가 기업의 부담능력과 적용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
 -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제는 소규모 기업에는 제도의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 예) 거래구조가 단순한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의 결과'인 증빙을 충실히 검증할 경우 거래의 과정에 대한 검증 없이도 회계오류 방지가 가능
 - 대형 비상장회사 중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대형 상장사에 적용되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인 독립성 확보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

- ③ (감사기준) 국제감사기준은 대형 상장기업 위주로 설계되고 감사인의 '원칙'만을 제시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곤란
 - 대형 상장기업에게 요구되는 감사절차가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적용되어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감사절차가 수행되는 경향
 - * 예) 국제 감사기준은 회사의 내부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은 상근감사가 없고, 비상근감사의 통제·감시역할도 제한적
 - 피감기업 입장에서는 감사요청사항에 대한 대응에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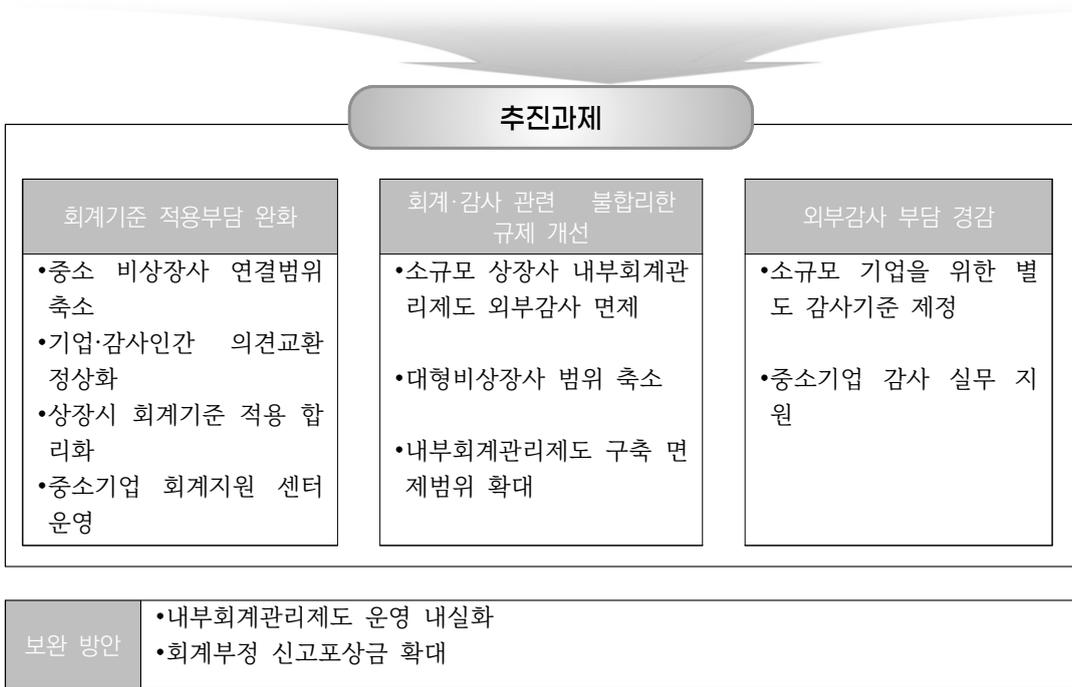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기본 방향

- ◇ (기업부담 완화) 중소기업들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회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 관련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여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규제만을 적용토록 하고 회계제도 준수를 지원

- ◇ (보완 방안) 경영진 등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부정과 관련한 내부 신고유인도 제고



1 회계기준 적용부담 완화

1. 중소 비상장사 연결범위 축소

- (현행) K-GAAP 개정('18년)으로 비상장사(모기업)에게 모든 종속기업(非외감기업도 포함)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발생*('22년)
 - * (기존) 非외감대상 종속기업은 연결을 면제하고 외감대상(자산200억원 이상 등) 종속회사만 연결
- 규모가 작고, 투자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까지 IFRS와 동일한 모든 종속회사 연결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 (개선)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 연결의무 대상을 축소
 - (대형 비상장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는 연결의무를 면제

〈K-GAAP 개정 후 비상장사 연결범위 변화〉

구분	기존('18년 이전)	현행('22년)	개선	
대상	▪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대형 비상장사	기타 비상장사
연결범위	▪ 외감대상 종속기업	▪ 외감대상 종속기업 + 비외감 종속기업	현행과 동일	비외감 종속기업 연결의무 면제

☞ (조치 필요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개정

2. 기업·감사인 간 의견 교환 정상화

- (현행) 외부감사법(§6⑥)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 등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
 - * 외부감사인이 감사수임을 위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해 주는 행위를 근절하고, 동일한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위험(자기검토위험) 방지 목적
- 그간 외부감사인의 가능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기업과 감사인 간 통상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저해하는 문제 초래
 - 자문금지 규제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처벌 우려로 감사인들이 기업의 재무제표 수정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
 - 특히, 회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외부자문·평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재무제표 작성비용 부담이 증가
- (개선) 외부감사인의 허용/금지행위*에 대한 실무 사례집 배포 및 비조치 의견서 제도 적극 활용
 - * (허용행위) 기업이 제시한 회계처리 내용에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등의 행위, 회계기준 위반 지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
 - * (금지행위)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직접적인' 개입
- ①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인/기업 간 의견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교환 사례를 제시



〈사례집 예시 : “회사가 처리한 회계처리 검토”〉

- (허용행위) 외부 감사인이 회사가 제시한 근거에서 오류가 있거나 논리적이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
- (금지행위) 외부 감사인이 회사 제시 문서를 직접 수정하여 회사에 전달

②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용 안내를 통해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자문금지 규제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3. 상장시 회계기준 적용 합리화

- (현행) 코스닥 상장사는 K-IFRS를 의무 적용
 - 상장에 따라 회계기준이 K-GAAP에서 K-IFRS로 변경시 기업이 보유한 리픽싱* 조건부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는 자본에서 부채로 전환**
 - * RCPS 발행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면 행사가격을 낮춰주고, 행사수량을 늘려주어 투자자의 투자원본을 발행자가 보장하는 조건
 - ** (K-IFRS 원칙) 리픽싱 조건이 있는 경우, 금융부채로 처리 후 공정가치 평가
 - 리픽싱 조건부 RCPS 발행사는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리픽싱 조건으로 인해 오히려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감소
 - * 리픽싱 조건이 있는 경우, 주가가 상승하면 발행자가 교부해야할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파생부채 평가액이 증가(파생상품평가손실 인식)
 - 現 코스닥 상장규정에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익이 포함된 세전손익이 관리종목* 지정기준으로 되어 있어 신규상장사들은 주가 상승시 관리종목 지정 등 위험에 노출
 - * 지정사유: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 정책대응 애로사항 〉

- (회계기준 개정 불가능) 한국은 IFRS 전면도입국으로, IFRS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리픽싱 조건부 전환권을 자본처리하거나, 시가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불가
- (국내 특수한 거래유형) 리픽싱 조건은 한국만의 독특한 자금조달 조건으로 IFRS를 제·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정을 유도하기 어려움

- (개선)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를 주식 공시하고, 이를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등 상장관리에 활용

- ① (회계기준 보완)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를 주식사항으로 공시*
 - *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IFRS 전면도입국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마련(~'22년 하) → '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절차 추진

- ② (상장규정 내실화) “리픽싱 조건부 금융상품 평가손익을 제외” 한 경영성과*(세전손익)를 관리종목 지정 등 기준으로 활용**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활용하는 재무수치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 주식 공시를 추가한 회계기준 개정이 이루어지면 거래소가 “주가 변동에 따른 RCPS 평가손익” 파악 가능

☞ (조치 필요사항) 회계기준(K-IFRS)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주식 공시를 추가한 회계기준 공개초안(안)
한138.5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문단 11(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부채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주식으로 공시한다. (1) 최초 인식시점 장부금액과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복수의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2)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 (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2)를 제외한 금액

〈회계기준 개정 일정(안)〉

내용	일정	수행주체
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마련·의결	'22.8월(기 완료)	회계기준원
개정 공개초안 의견조회	'22.9-10월	"
회계기준 개정 최종안 의결·보고	'22.11월	기준원·금융위
개정안 시행	'23.1월~	-



4.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운영

- (현행) 중소기업은 회계 전문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원칙 중심 회계기준(K-IFRS)의 해석과 적용에 많은 어려움
 - ① 재무제표 작성 등을 회계법인의 자문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회계 관련 비용이 큰 상황
 - 코스닥협회에서 회계처리지원 데스크(desk)를 운영 중이나, 협회 자체의 인력과 재원 부족으로 광범위한 지원에는 한계
 - ② 회계처리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기준원 질의회신 사례, 감독지침 등)들이 여러 기관(금감원·기준원 등)에 분산
 - 회계처리 애로 발생시 일일이 개별기관에 문의하거나, 자료를 검색해야 하는 등 불편 상존

- (개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설치·운영
 - ① 거래소 內 설치하고, 한공회·코스닥협·기준원·회계법인 등이 실무인력을 지원
 - ②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 지원 등 업무 수행
 - ③ 센터 內 회계처리 지침과 질의회신 등 실무사례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
 - 유관기관 간 협조를 통해 통합 DB를 구축하고, 기업 등 이용자들이 원스톱(One-stop)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④ 웹페이지 게재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기업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기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반기 1회)

☎ (센터 대표번호) ☎ 02-3774-9413

2 회계·감사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1.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 (현행) 상장회사는 '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시행 중*
 -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 (‘19년) 자산 2조원 이상 (‘20년) 5천억원 이상 (‘22년) 1천억원 이상 (‘23년) 1천억원 미만
 - '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 포함)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확대될 예정

- 내부회계 감사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 증가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
 - * 상장기업 ROE('21년기준) : (자산1천억원이상) 4.3% (자산1천억원미만) △11.9%
 -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한 만큼 재무제표 감사를 통해서도 오류·부정 적발 가능
 - 내부회계 감사의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의견 지속 제기
- (개선)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인증 수준을 현행 검토*로 유지
- * 외부감사인인 주로 대표이사가 작성하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질문 위주의 검증 실시 (「참고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감사의 차이)

< 해외사례 (미국) >

- 미국은 소규모 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SOX법 등에 따라 ①유동주식(Public Float) \$0.75억 미만, ②유동주식 \$0.75억~7억이면서, 매출액 \$1억 이하 기업은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면제

☞ (조치 필요사항) 외부감사법 개정

2. 대형비상장사 범위 축소

- (현행) 대형비상장사(자산 1천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상장기업에 준하는 회계감사 규제가 적용*
- * ①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②감사담당이사의 연속감사 가능기간 제한, ③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④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등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산 5천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형비상장사에 포함
 -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자원이 불충분한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
- (개선) 이해관계자 보호 실익을 고려하여 대형비상장사 범위 축소
- 원칙적으로 대형 비상장회사 기준을 자산 1천억원에서 자산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 ①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②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자산 1천억원 기준을 유지
 - ※ '21.7월 기준 외감기업 중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 구간에 있는 비상장사 3,119개 중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85개(2.7%)

〈기준 변경에 따른 대형비상장사 해당 여부〉

구분	현행	개선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X	X
자산총액 1~5천억원	○	△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	○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	○	X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

☞ (조치 필요사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3.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 확대

- (현행) 상장사와 자산 1천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비상장사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외부감사인 검토 의무*가 부과
 - * 단, 유한회사와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특수목적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제외
 - ※ (해외사채) 미국과 일본은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적용대상을 상장사로 한정하고, 비상장사는 적용 제외
 - 비상장사는 자산총액으로만 적용대상이 결정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보다 부담이 크다는 지적 제기

- (개선) 대형 비상장사 기준 변경시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외부감사인 검토의무도 적용범위를 축소
 - ①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②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는 현행기준과 동일하게 자산 1천억원 미만만 면제
 - 기타 비상장회사는 면제기준을 자산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자산규모 및 법상 근거여부를 불문하고 면제

〈비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구축 및 검토의무 면제대상〉

구분	기존	변경
①.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자산 1천억원 미만 면제	현행 유지
②. ①이 아닌 비상장사	상동	자산 5천억원 미만 면제
③. 특수목적회사(SPC)	▪ 법상 근거있는 SPC만 면제	법적 근거 불문 면제

☞ (조치 필요사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3 외부감사 부담 경감

1. 소규모 기업을 위한 별도 감사기준 제정

- (현행) 국제감사기준(ISA)은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 중심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4년에 도입
 - 규모와 거래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감사절차가 적용되어 소규모 기업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문제 지적
 - 감사기준에 소규모기업 대상으로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판단기준, 생략 가능 절차 예시 등 구체적 지침이 없어 실무활용이 어려운 상황

〈 해외사례 (미국) 〉

- 노르딕 국가,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별도 감사기준을 적용하거나 개발 중
- * 중소기업 대상 별도감사기준 개발 및 중소기업 감사를 위한 소프트웨어/IT 도구 제공

-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도 '덜 복잡한 기업(Less Complex Entities)'을 대상으로 하는 완화된 감사기준 제정을 추진 중*
 - * 공개초안 발표('21.6월) → 의견수렴(~'22.1월) → 최종기준 승인 계획('22.12월 예정)
→ 기준 시행('24년 중순 예정)
 - 다만, 중소기업 감사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공개초안 기준)이고 국내도입까지 2년 이상 소요 전망('24회계연도 감사('25년 실시)부터 적용)
-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감사기준 제정
 - (제정방향) 거래구조가 단순한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절차와 프로세스보다는 “결과 중심”의 감사가 수행되도록 기준 개발
 - 기업과 회계업계,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기존 감사기준 대비 제외*하거나 완화**해야 할 감사절차를 명확화
 - * ①상장기업에만 관련되는 사항 : 예)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부문정보에 대한 감사
 - ②비상장 중소기업과 관련성이 낮은 사항 : 예)복잡한 회계추정 관련 감사절차
 - **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항 : 예)위험평가절차 간소화
 - 다만, 별도 감사기준 적용 대상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회계신인도 저하 방지를 위해 국제감사기준(ISA)의 기본원칙*은 유지
 - * 위험중심 접근법,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증거 취합 등
 - (적용대상) 외감대상 기업 중 ①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②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 기업**
 - * 표준감사시간(외부감사법) 적용 유예 대상(그룹11: 자산 200억원 미만)

-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사를 상장여부, 기업규모, 사업복잡성 등에 따라 11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로 필요한 감사시간을 공인회계사회가 산정
- ** '21년 기준 외부감사 대상 기업(33,250개) 중 자산 2백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백억원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약 39%(약12,887개, 연결 재무제표 작성기업·금융회사 제외)
- 단, 이해관계자가 많고, 거래구조가 복잡한 ①상장 예정기업, ②연결 재무제표 작성기업과 ③금융회사는 적용 제외*
- * IAASB도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업무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감사절차 완화 대상("덜 복잡한 기업"(Less Complex Entities))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 또한, 상장기업은 K-IFRS를 따르므로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별도 감사기준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 (상장기업은 ISA 적용)

☞ (조치 필요사항) 회계감사기준 개정

- (향후계획) 별도 감사기준 제정 완료(~'23.1분기) → '23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

〈소규모 기업 대상 감사기준 제정 일정(안)〉

내용	일정	수행주체
감사기준 제정 공개초안 발표	'22.11월	한공회
공개초안 의견 조회	'22.11-12월	"
감사기준 최종안 의결·승인	'23.1월	한공회·금융위
제도 시행	'23.4월~	-

2. 중소기업 감사 실무지원

- (현행) 중소기업은 감사보수 부담으로 인해 주로 중소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
- 중소 회계법인은 대형법인*과 달리 인력 및 재원상 한계 등으로 소규모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수행이 어려움
- * 소규모 회사 감사시 자체 개발한 완화된 감사프로그램과 맞춤형 소프트웨어 사용

〈 현장의 목소리 〉

- 소규모 기업에게는 감사절차 및 문서화 수준을 완화하는 대형법인과 달리 중소회계법인은 국제회계감사기준(ISA)에 따른 감사절차를 중소기업에게 그대로 적용
- 감사품질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나친 문서화와 형식적인 감사절차 이행에 따른 중기업계 애로사항 지속 제기

- (개선)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무지원

- ① 소규모 기업 감사 매뉴얼 제공
 - 일상적인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감사 지침* 마련
 - * 감사업무 흐름을 따라 구체적인 감사절차를 소규모 기업 맞춤형한 절차지시서(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와 판단기준 제시)
- ② 소규모 기업용 감사조서 서식 개발
 - 소규모 기업 감사에 불필요한 조서는 최대한 줄이고 필수 핵심절차 위주로 구성하여 제공
 - 조서 작성 방법과 수행할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성격의 조서 작성 사례 제공

4 보완 방안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실화

- (1)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 (현행)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필수 첨부서류)를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구성(작성주체별)
 - 회 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대표이사), 평가보고서(내부 감사기구)
 - 외부감사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상의 공시 내용이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 *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작성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자율규정)상의 예시를 그대로 인용하여 제도 도입취지가 퇴색

〈 해외사례(미국) 〉 【참고3】 참조

- 미국은 허위공시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정 기간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 유도
- '18년 기준 미국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경영진 자체평가만을 수행하는 소규모 기업의 39.6%가 중대한 취약점을 자발적으로 공시

- (개선) 내부회계 준거기준(평가·보고기준)과 상세한 공시서식(운영실태/평가보고서)의 법적 근거를 확보
 - ①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 경영진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행한 내부통제활동*을 포함하도록 상세한 공시서식 마련

- * 예) ①자금부정 통제(자금이체·기록, 대사 및 물리적 통제), ②종합적인 부정위험 평가 수행, ③정보기술 일반통제, ④보상정책과 연관된 부정 유인·압력 파악 등
- 회사가 횡령 등 자금 부정의 예방·적발을 위해 추가 시행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
- * 예) 외부감사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분·반기 검토시 잔액조회를 실시한 경우
- ② (내부회계 평가보고서) 내부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감독 활동과 관련한 공시서식 개발·적용
-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협의 및 자금부정 위험 관련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등 공개

☞ (조치 필요사항) 외부감사규정 개정

<1.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 개선(안) (기업 내부 통제활동 공시서식 예시)>

구분		내역	
IT기반 통제수행	사용자 및 IT 권한 관리	통제내용	매출채권 월중 발생금액과 월말잔액 확인과 관련한 ERP상 운용체계(거버넌스) 점검
		수행시기	2022.6월~9월 (총 4회: 6.11, 7.14, 8.12, 9.9)
		수행인력	5명(팀장급 1, 대리급 4)
		투입시간	총 24시간 (총 4회)
		시정조치	자금이체·승인·기록 행위에 대한 ERP상 사용자 권한 관리 고도화

<2.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개선(안) (경영진·외부감사인과의 소통 관련 공시서식 예시)>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논의내용
경영진과의 협의				
1	'22.2.17.	감사위원회: 위원 3명 회사: 재무팀장	대면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 운영실태보고서 시정계획 이행결과 검토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 개선방안
2	'22.4.8.	감사위원회: 위원 3명 회사: 재무팀장, 감사팀장	영상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부정 통제를 위한 추가 테스트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영진의 준비사항 확인(통제활동 설계 등)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3	'22.2.24	감사위원회: 위원 3명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 외부감사인 보고내용과 경영진 운영실태 보고내역 비교

(2) 경영진의 내부회계 자율개선 유도

- (현행) 코스닥 상장기업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투자주의 환기종목” 으로 지정
 - 또한, 지정 이후 다시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
 -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코스닥 상장규정 §52①2.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코스닥 상장규정 §56①3.파.)
 - 외부감사인의 비적정의견 표명에 따른 페널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가 오히려 경영진의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외부감사인도 내부회계 감사과정에서 취약점을 발견하더라도 비적정의견 표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

〈 외부감사인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시 페널티 〉

- (상장규정) 코스닥기업은 내부회계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이후 비적정의견 재표명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외감규정)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받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내부회계 검토·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내부회계 감리를 실시할 수 있음

- (개선) 코스닥 시장조치 사유에서 내부회계 감사의견 관련 내용을 완화하고 회사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을 유도
 - ①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서는 제외
 - * 투자자들의 주의환기를 위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유지
 - ② 회계부정에 따른 감리 제재시 경영진·내부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충실성에 따라 제재조치를 가중·감경
 - 감리결과 제재사유에 해당함에도 경영진이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 조치 1단계 가중
 - 회사가 내부회계 취약점을 스스로 공시하고 개선한 경우 조치 1단계 감경

☞ (조치 필요사항) 코스닥 상장규정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2.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확대

- (현행)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제도 운영중('06년~)
 - 그러나,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더라도 엄격한 지급기준으로 인해 실제 보상금액이 낮아(건당 평균 3~4천만원 수준) 제보를 독려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 이는 낮은 건별 포상금 한도와 다양한 차감율* 등 다소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에 기인



* 차감요소(8개/100%): 신고내용 구체성·정확성(2개/30%), 증거의 충분성·중요성(2개/30%), 기타(4개/40%, 협조태도·부정행위자와의 관계·시장에 미치는 영향·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의 경과기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천, 만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지급건수	2	2	1	2	12	5	24
지급금액	2,740	3,610	330	11,940	40,840	22,860	82,320
평균지급금액	1,370	1,805	330	5,970	3,403	4,572	2,911

□ (개선) 건별 포상금 규모가 현재보다 3배 이상 되도록 포상금 산정방식을 개선

- 건별 포상한도 기준액(현행 5억원)을 2배 증액
- 포상금 산정액 차감요소는 핵심요소만 남기고 최소화*

* 예) '협조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자의성이 높거나, 지나치게 정성적인 요소는 제거

〈 해외사례 (미국) 〉

- 내부자가 SEC에 기업의 증권법 위반사항을 고발하여 SEC가 1백만불 이상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환수받은 부당이득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1934 증권거래법 §21F)

☞ (조치 필요사항) 회계부정신고 포상규정(고시) 개정

IV 기대효과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예상 효과
1. 회계기준 적용부담 완화			
▪ 중소 비상장사 연결 범위 축소	중소 비상장사의 非외감 종속기업 연결의무 면제	중소 비상장사 (약 28,400개사)	· 재무제표 작성비용 감소
▪ 기업·감사인간 의견 교환 정상화	사례집 배포 등	전체 외감기업 (33,250개사)	· 외부자문비용 감소 (매년 회사당 약8백만원)
▪ 상장시 회계기준 적용 합리화	RCPS 등의 평가손익 정보를 주식 공시하고거래소 상장관리에 활용	발행기업* *최근 3년('19~'22년) 주식연계채권 발행건수 1,595건 (23조원)	· 관리종목 지정 위험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회계지원 센터 운영 	센터설립 및 기업지원	전체 외감기업 (33,250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자문비용 감소 (매년 회사당 약8백만원)
2. 회계·감사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상장사 내부 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면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감사('23년 예정) 면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약 800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 절감 (회사당 약46백만원) 내부회계 수감비용 절감 (매년 회사당 약4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비상장사 범위 축소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자산 1~5천억원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 (3,034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감사 관련 절차 및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 확대 	대형비상장사 기준에 맞춰 내부회계 적용범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 검토비용 감소 내부회계 구축비용 절감
3. 외부감사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기업 별도감사기준 제정 	비상장 소규모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기준 마련	자산 2백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백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 (약 12,88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 수감비용 감소 (매년 회사당 약3백만원)

V 향후계획

-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4분기중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 입법필요사항(법률, 외감규정 등)은 '23.2분기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추진과제	조치사항	담당	일정
1. 회계기준 적용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 비상장사 연결범위 축소 	K-GAAP 개정	금융위·기준원	'2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감사인 간 의견 교환 정상화 	사례집 배포 등	금융위	'2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사 회계기준 적용 합리화 	K-IFRS,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금융위·기준원·거래소	'2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운영 	센터 설립	금융위·거래소 등	'22.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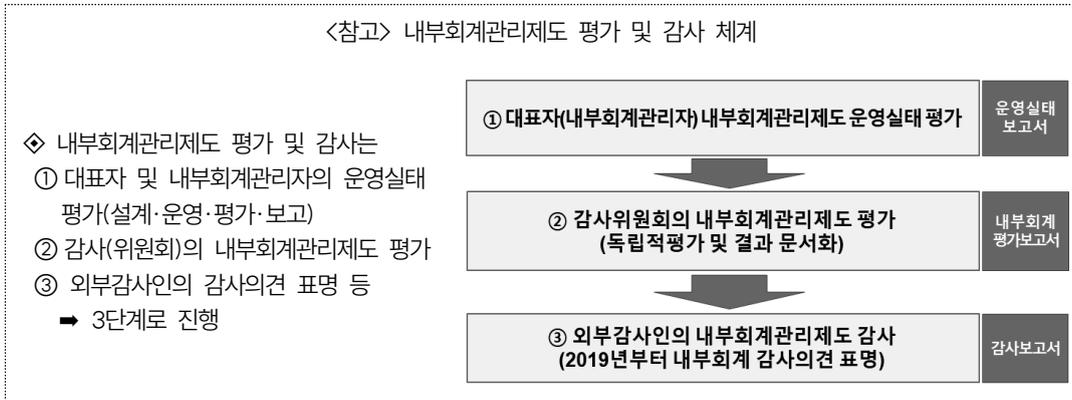
2. 회계·감사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법 개정	금융위	'22.4분기
▪ 대형 비상장사 범위 축소	시행령 개정	금융위	'23.2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	금융위	'23.2분기
3. 외부감사 부담 경감			
▪ 소규모 기업 별도 감사기준 제정	감사기준 제정	금융위·공인회계사회	'23.1분기
▪ 중소기업 감사 실무지원	감사매뉴얼 제공 등	공인회계사회	'22.3분기
4. 보완 방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실화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외감규정 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금감원	'23.1분기
② 경영진 내부회계 자율개선 유도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거래소·금감원	'23.1분기
▪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확대	포상규정 개정	금융위	'23.1분기

참고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
- 내부회계는 ①경영자의 운영·평가, ②(내부)감사(위원회)의 평가, ③외부감사인의 인증(감사 또는 검토) 순서로 진행
- '19년부터 상장법인의 내부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수준이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 * 자산 2조원 이상('19년) → 5천억원 이상('20년) → 1천억원 이상('22년) → 전체('23년)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 체계



참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감사의 차이

- (검증대상)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
 - * 점검결과, 미비점 및 시정계획, 직전년도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
-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
- (수행절차)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
 - '감사'는 내부통제 관련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 또는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 수행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비교 >

구분	검 토	감 사
검증 대상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포함)
수행 절차	질문 위주 (또는 제한된 수준의 문서검사)	통제절차의 재수행, 문서검사, 관찰, 질문

참고 3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관련 공시 사례

- 미국은 기업이 내부회계 관련 공시 세부사항 위반 등 제재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즉시 제재하는 대신 상당한 시정기간을 제공
 - 제재로 기업의 ICFR 개선을 유도하기 보다는 기업이 ICFR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함
 - 2018년 기준 미국에서 ICFR 자체평가만을 수행하는 기업 중 39.6%가 ICFR에 대한 중대한 취약점을 자발적으로 공시
- 미국의 ICFR 의견변형 사유는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미흡(36.7%) 외 내부통제를 위한 환경 구축 미흡(58.8%)이 많은 비중을 차지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의 ICFR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비적정 사유를 인용하거나, 요약하는 경우가 많음

〈 미국의 ICFR 의견변형 주요 사례 〉

구분	비적정 사유(국문 번역)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미흡	
회계정보 통제 (A사)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재조정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않았고, 모든 잠재적 오류를 파악하기 위한 검토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분개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승인이 부재
재무제표 수정 (B사)	회계정책 변경 및 관련 통제 적용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그 결과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수익인식 회계기준인 ASC 606을 적용하고 관련 통제 수립이 지연. 이로 인해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기간 중 재무제표에 몇 가지 수정이 발생
재무제표 수정 (C사)	스톡옵션 수정 관련 회계에 대한 내부통제를 설계 및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8년 퇴사자의 이의의 건을 처리할 때 중대한 계산오류가 발생. 임원의 퇴사로 인한 스톡옵션 수정은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업무.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방지 및 발견하지 못한 연결재무제표상 오류를 수정
내부통제를 위한 환경 구축 미흡	
회계인력 및 전문성 부족 (D사)	재무보고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통제를 US GAAP 및 SEC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
정보기술 일반통제 미흡 (E사)	ERP 시스템 지원 계정이 부적절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식별. 만약 이 계정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거래를 과도하게 변경하였을 수 있음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7일(금)	10월 11일(화)	10월 12일(수)	10월 13일(목)
미 달 러 (USD)	1404.20	1410.30	1433.50	1430.40
일 본 엔 (JPY)	968.58	968.31	982.96	974.88
영 국 파 운 드 (GBP)	1566.39	1560.85	1574.34	1586.96
캐 나 다 달 러 (CAD)	1021.65	1023.96	1039.52	1034.91
홍 콩 달 러 (HKD)	178.88	179.66	182.61	182.22
위 안 화 (CNH)	199.40	198.64	199.66	199.23
유 로 화 (EUR)	1374.71	1369.26	1392.29	1388.13
호 주 달 러 (AUD)	899.95	887.85	899.23	897.08
싱 가 폴 달 러 (SGD)	982.61	981.73	996.56	996.7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02.79	303.29	306.76	305.48